외국법령 2010-1

프랑스 법조인접직역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

목 차

Ⅰ. 서 론 ·····5

Ⅱ. 프랑스 자격사 통합 당시의 변호사제도 개관 ·····9

A. 변호사와 대소사(les avou□s)의 활동영역 근접화 경향 ·····10

B. 사법 영역과 법조 영역의 구분에 대한 극단적 측면 ·····11

C. 1957년 로마 조약의 영향 ·····13

Ⅲ. 법조인접직역통합의 역사적 전개 : 협의의 통합과 광의의 통합 ····13

A.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 제71-1130호. ·····14

B. 법률 개정의 필요성 제기 ·····14

C. 1990년 12월 31일의 법률 제90-1258호와
법률 제 90-1259호에 의한 법률개정 ·····17

D. 2004년 법률 개정과 시행령 ·····19

Ⅳ. 1971년 법조직역 통합에 관련된 직업 및 통합 과정 ·····19

A. 변호사 ·····20

B. 지방법원 대소사(les avou□s) ·····20

C. 상사법원의 소송대리인(les agr□□s) ·····21

D. 기업 법률가(Les juristes d’ entreprise) ·····22

Ⅴ. 1990년 개정에 관련된 법조 직역 및 기타 법조 직역의 통합 ··23
A. 1990년 법 개정 이후 새로운 직업의 변호사 ……23
B. 법률 상담사 ……29
C. 변리사(Les conseils en propri□t□ industrielle) ……30

Ⅵ. 법조직역 통합 이후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변화 ……31
A. 법률 행위 규제 범위와 대상 ……33
B. 법률자문과 법률 문서작성을 인가 받은 사람 ……34
C. 도덕적 측면의 자격 요건 ……39
D. 형사 처벌 ……39
E. 문제 제기: 부수적인 법률 행위 실행에 있어서의 개선점 ……40

Ⅶ. 향후 변화 방향 ……42
A. 기업 변호사 ……42
B. 공증인에 상당하는 공증문서작성 효력 ……45
C. 새로운 활동 허가 ……47
D. 기타 Darrois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약 ……49

Ⅷ. 결 론 ……52

참고자료 ……53

Ⅰ. 서 론

프랑스의 변호사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1971년 12월 31일의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la loi porte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ries et juridiques)이다. 이 법률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90-1259호인 개정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고 이어서, 2004년 11월 24일의 법률 제2004-130호[1]에 따른 개정에 의해 크게 수정되었다.

그리고 또한 1991년 11월 27일의 시행령, 1992년 7월 20일과 1993년 3월 25일의 시행령은 물론 국내 적용 규칙을 정하는 변호사 협회 중앙회의 결정 제2005/003에 의해 완성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1991년 11월 27일 시행령 제91-1197호는 법조인접직역의 통합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기 말, 외국변호사들, 특히 영미계 변호사들은 이미 상법분야에서 법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반면에, 프랑스 변호사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변호사 윤리규정상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고객을 찾아가거나,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당시 상법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매우 드물었고 상사 분야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상사분야에서 법조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정부는 상사분야의 법률자문이 필요 할 경우에 외부 법률 전문가보다는 정부에 속한 변호사들에게 의뢰하였지만, 프랑스 기업들은 외국에 투자하거나 거래가 있을 경우, 영국-미국 법률회사에 속한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왔다.

---

1)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법률개정(2004년 11월 24일)에 따른 2005년 5월 24일에 발표된 시행령 및 변호사 윤리규정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시행령.

이처럼, 변호사의 직무 영역은 점차적인 전문화 양상에 따라 여러 갈래로 파생되어 갔지만 프랑스 변호사들의 주요 활동영역은 오랫동안 변론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프랑스적인 전통과 관습은 변호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변호사 업계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지난 20년간 매우 변화되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의 수적인 증가 측면에서 보면, 1986년에서 2006년 사이에 프랑스 변호사는 18,076명에서 45,459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그들의 연간 수입은 69,094유로에서 70,616유로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2)]

이 중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2006년 45,459명중 30,159명)의 연평균수입은 48,847유로인 반면에, 합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2022명)의 연 평균 수입은 233.281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들의 2/3의 연평균수입이 120,000유로 이하이고 50%의 변호사들은 연수입 42,536유로 이하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격차는 변호사들의 활동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활동분야가 상사분야인지 혹은 소송분야인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상황의 다양성에 의해 법이 소비, 경쟁, 주식 및 환경 등의 분야로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사법 분야의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몇몇 분야의 소송이 삭제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대체되어(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들 간의 합의) 소송이 줄어든 반면에, 전문분야의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의 소송이 증가한 점이다. 이는 변호사들의 소송활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법률 시장의 국제화는 법

2) Jean-Michel DARROIS, Rapport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법률 직업에 관한 보고서)(이하, Rapport Darrois라 한다), p. 14.

률 시스템 사이의 상호 근접성을 부추겼고 이에 프랑스 변호사들은 국내외 개인 고객과 기업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 업계의 현대적 개혁을 필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프랑스 변호사들이 대리행위나 변론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한, 변호사 직업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변호사들은 기업과 개인에게 법률적 조언과 자문을 하는 소송 이외 업무로 활동을 전환하게 되었고 결국, 1992년에 법률상담사를 변호사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1971년과 1990년 법률에 따라 예전의 상사법원 소송대리인(les agrees)과 예전의 변호사, 예전의 지방법원 대소사(les avoués)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사 직업이 창설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2년 1월 1일부터는 예전의 “법률상담사”라고 불리었던 직역 종사자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변호사 직업으로 통합되었고 변호사 전문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통합 이후, 점차적으로 두 직역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였지만, 여전히 두 직역간의 업무 분할은 남아있다. 즉, 대부분의 법률 상담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자문을 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협상에 참여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송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반대로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아직 소송 이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여하고 있지 않고 회사나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소송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영역의 업무 분할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변호사 직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일관된 전문교육기관과 단일 조합이 없고, 또한 변호사 업계의 역동성 부족으로 인해 이 새로운 변호사업계 내에서 파생하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3)]

결론적으로, 특정 법조 및 법률 관련 직업을 통합하게 되는 된 배경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법조체계를 재정비하고 여러 종류로 산재되어 있었던 법률서비스를 새로운 변호사 전문직역으로 통합하여 간편화하고 현대화 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업무의 확대를 통하여 변호사들의 수입원을 확보하여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고, 변호사업계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원으로써 기존의 변호사 업무의 재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특정 법조 및 법률 관련 직업 통합”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은 계속적인 발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프랑스 변호사 제도를 개관하고 특히 1971년 12월 31일 법률제 71-1130호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la loi portent réforme de certines professions judiciaries et juridiques)>과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90-1259호 개정법률의 내용을 살피면서, 법률상담사의 변호사 직역으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무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법률상담사들이 담당해 왔고

3) Rapport Darrois, p. 15

1990년 이후로는 세무 전문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상담사와 변호사의 통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논의 중에 있는 법조직역 통합과 관련하여 세무사들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4)]

Ⅱ. 프랑스 자격사 통합 당시의 변호사제도 개관

프랑스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업무와 기타 법률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자이다. 즉 변호사는 법조 종사자(le professionnel judiciaire)이자 동시에 법률종사자(le professionnel juridique)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1971년 12월 31일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법기관 종사자(auxiliaires de la justice)가 세 종류로 나눠져 있었다:

- 소송대리와 변론을 담당했던 전통적 의미의 변호사;
-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변호사, 집달리, 법원서기, 국사원과 파기원 변호사들을 지칭하는 사법공공직무자(l'officier ministeriel): 이들은 실질적으로 각기 독점영역에서 활동하였다;
- 변호사와 사법공공직무자를 제외한 전문인들: 즉, 상사법원의 소송대리인(Les agrées), 파산 절차의 법정관리인, 조합, 중개인-조사

4) 한편, 현재 프랑스에서는 변호사 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개정 법률이 2010년 6월에 국회 상정되어 검토 중에 있다. 이 법률이 공포되지 않은 이상,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 제도의 기본법률인 1971년 12월 31 법률의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 미리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법조직역에 관한 보고서"(Darrois 보고서)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개정 방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과 같은 특수한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원에서 일하는 법률 대행인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는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토론과 비평의 대상이 되어왔고 개선의 필요성이 재기되기에 이르렀다.

위의 전통적인 직업들에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특히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5)]

A. 변호사와 대소사(les avou□s)의 활동영역 근접화 경향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변호사나 대소사가 한두 명의 비서를 두고 혼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요구 사항이 다양화되면서 차츰 변호사들끼리 동업하기를 선호했다. 그리하여 1954년 이후에는 각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동업을 허락했고 이어서 전문인 민사회사(la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내에 공증인(les notaires), 대소사(les avoués), 법원서기(les greffiers), 상사법원 소송대리인(les agrées), 동산경매인(le commissaire priseur), 상업 서기(les greffiers du commerce) 및 변호사가 함께 모여 연합 법률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사는 복합전문인민사회사로 여겨지기가 매우 어려웠고, 일관된 법률전문회사로 설립되기에도 부적합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다.

5) Serge Guinchard/Gabriel Montagnier/André Varinard,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Dalloz, 9ème éd. 2007, p. 962 et s.

한편, 변호사와 대소사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소송에서의 이중 구조를 의미하는데, 변호사들은 그들의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에서 변론만 담당하고 나머지 소송상의 일체의 절차를 수행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직무는 대소사(avoué)가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에 반해, 상사법원에서는 상사법원소송대리인이 대소사와 변호사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의 다원적인 구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송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 절약의 측면에서 부적합 구도라는 비평을 받아왔다.[6] 더구나 당시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대소사와 동일하게 특정 분야의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소사 직책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B. 사법 영역과 법조 영역의 구분에 대한 극단적 측면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법률 직역은 의식적으로 사법 분야와 법조 분야를 의식적으로 구분해 왔고, 법률 업무의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었다. 즉, 사법분야는 변호사와 대소사의 영역으로서 법원이 개입하기 전의 모든 법률 업무를 말하고, 법조분야는 공증인 등 법원과 관련된 업무영역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발달 양상과 소송문화의 변화는 이러한 협소한 의미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회사법, 노동법, 조세법,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과 같은 분야의 발달은 법률 상담사 혹은 세무 상담사, 부동산 중개인 혹은 공인

6) Roger Perrot, Institutions juficiaires, Montchrestien, 12è édition, 2007, p. 334.

중개사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자유롭게 생겨나게 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 영역의 발달 앞에 여전히 폐쇄적이었던 법조계의 모습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여러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요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때로는 자격이 부적격한 사람들이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도 법률상담사 사무실을 열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소송문화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이혼 소송의 간소화와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로 전환 등으로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소송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에 반해, 상업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소송들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 소송 이외의 분야 즉, 법률 상담, 법률자문, 계약 협상,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순수하게 법률적인 분야가 기존의 사법분야를 제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변호사, 대소사 및 상사법원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분야에만 치중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변호사들은 상사회사나 건설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공동주택 조합 총회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를 모색해야만 했다. 더구나, 이 분야는 변호사 협회나 사법공공직무자 분야에서처럼 철저히 규제되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츰 다른 전문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쟁관계로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변호사들은 상사분야에서 기존의 변호사직업윤리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들의 경쟁력과 신망을 확보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C. 1957년 로마 조약의 영향

유럽공동체 조약 원칙에 따른 유럽공동 법률시장의 발전은, 유럽 공동체에 속한 다른 나라들의 사법과 법률적 구조와 자국의 그것들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할 필요를 부여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프랑스는 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법률상담 사무소는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조약의 실행은 더욱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사법분야에서 특히 행정법과 세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강하면서 개인은 물론, 회사에서 제기되는 사법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가 집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법률가 집단의 구성은, 미국과 같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내의 기존의 법률 서비스직업들간의 통합을 불가피하게 했고, 이 통합은 전체적으로 사법분야와 법률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의 직업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Ⅲ. 법조인접직역통합의 역사적 전개 : 협의의 통합과 광의의 통합

1969년과 1970년에 두 개의 법률개정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변호사와 대소사를 통합하는 협의의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법률상담사까지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변호사 직업”을 창설하는 광의의 통합이 거론되었으나, 기존의 법률종사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7)]

이러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제정 및 개정이 여러

7) Roger Perrot, Institutions juficiaires, Montchrestien, 12è édition, 2007, p. 337.

단계 별로 실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변호사 직업에 지방법원 대소사와 상사법원 소송대리인을 하나로 통합하고 고등법원의 대소사는 남겨두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A.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 제71-1130호.[8)]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리는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은 지방법원 대소사와 상사법원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하였다. 즉,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 71-1130호의 제1조 1항은 "새로운 변호사 직업은 기존의 변호사 직업과 지방법원의 대소사와 상사법원의 소송대리인의 세 가지 직업을 통합하여 개별적으로 혹은 회사의 형태로 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생겨난 변호사는 선서를 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9)]

이로써 변호사 직업은 기존의 변론 업무에서 소송대리업무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소송을 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첫 번째 법률 제정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의 보호 영역 밖에 남아 있는 영역을 다시 통합함으로써 또 한 번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B. 법률 개정의 필요성 제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변호사들은 사법종사자(le professionnel judiciaire)로서 소송절차에서 변론하는 소송업무를

8) 첨부자료1 참고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 71-1130호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la loi porte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ries et juridiques)>

9) 이 법률은 1972년 9월 16일에 발효되었다.

주로 하는 “소송하는 사람(home de process)으로만 활동하면서 자리잡는 동안, 변호사들이 도외시한 전문 영역은 다른 법률종사자(le professionnel juridique)가 맡아왔다.

법률상담 사무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문 영역 특히, 회사법과 조세법과 같은 민사영역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명세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률 상담과 법적인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나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에 특별한 학위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10] 이에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어 왔다.

법률상담사를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는 1971년 법률 개정 당시에 이미 제기되었다. 그러나, 1971년 법 제정자들은 법률상담사를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기존 법률상담사들의 거세한 반대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많은 법률상담 사무소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조직을 변호사 직업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상업적 활동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11]

결국, 1971년 법은 법률상담사의 경우는, 법률상담사의 자격을 걸고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동법 제 54조에서 66조).

한편, 동법은 처음의 “대통합”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1971년

10) Roger Perrot, Institutions juficiaires, Montchrestien, 12è édition, 2007, p.335
11) Roger Perrot, Institutions juficiaires, Montchrestien, 12è édition, 2007, p. 339.

법률 개정 당시에 마련해 두었다. 즉,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 제78조는 대법원장(Garde des Sceaux)에게 “변호사와 법률 상담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해 놓았다. 위원회는 1973년에 창설되었으나, 1977년 6월 22일에 와해되었다. 그 후 1986년에 다시 시대적 압박, 특히 변호사들의 압박에 의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 첫 번째 배경은, 당시 1971년 법률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법률상담사들은 점점 더 완전한 직업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많은 법률상담소들이 다양한 분야로 그들의 영역을 확대해갔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 영역에서의 법률 상담 및 법률 문서 작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특수 영역인 법률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1985년의 유럽 단일 시장 조약 체결 및 1993년 1월 1일의 유럽 공동 시장 개설에 입각하여, 프랑스 변호사들은 외국변호사들과 경쟁에 직면하였고 지금껏 산재되어 있던 법조직역(les professions judiciaires)을 간편화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당시, 점점 더 많은 외국 법률사무소들이 프랑스 법률시장에 자리잡으면서 국제법률분야의 상당부분을 외국법률회사가 차지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다.[12] 이에, 변호사와 법률상담사들 중 몇몇은 의식적으로 서로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여러 종류의 위원회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변호사와 법률상담사의 통합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정

12) Roger Perrot, Institutions juficiaires, Montchrestien, 12è édition, 2007, p. 339.

부는 두 가지의 법률안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 중 하나는,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직 민법회사에 관한 것으로써, 이 회사의 법적 형태에 의해, 두 직업이 각자의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법률의 규제를 받으면서 함께 활동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두 법률안이 1990년 6월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같은 달 20일에 반대 여론에 부딪혀 부결되었고 정부는 상원(Sénat)에 이를 상정하여 1990년 12월 31일에 공표되었다.

결국,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90-1259호에 의해 변호사와 법률상담사를 통합하는 두 번째 통합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변호사 직업을 탄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1971년 법률 규정에 더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

C. 1990년 12월 31일의 법률 제90-1258호와 법률 제90-1259호에 의한 법률개정

법률 제 90-1258호는 자유직 회사에 관한 내용이고 법률 제 90-1259호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사의 통합에 관한 내용과 사법분야의 법률 자문에 관한 규정과 사서 문서 작성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법조전문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법률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법률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개정 내용 요약

1990년 12월 31일의 법률 개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개정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1993년 유럽공동체 국가들간의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해 프랑스 법률 전문가들의 경쟁력 강화;
- 둘째, 현재까지 지나치게 분산되어있었던 법률종사자들을 간편히 정비하기 위해서 두 영역 즉 새로운 직업의 변호사와 공증인으로 통합하는 내용;
- 마지막으로, 사법분야의 법률자문과 법률문서 작성은 법률분야에서 경쟁력이 보장되고, 개인적 책임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고 이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하기 위한 내용.

2. 자유직업 회사 운영의 측면

자유직업회사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이 회사가 법조전문직 차원을 넘어 현대사회의 경제적 합리성과 경쟁 요건에 맞는 하나의 기업차원에서 모든 법률전문직을 하나의 법률조직으로 구성하는 데에 있다. 1990년 법률 제 90-1258호에 따라, 변호사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자유직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자유직 종사자들 예를 들면, 회계사들과 함께 동업할 수 있다.

3.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대한 측면

1990년 법률 개정에 의해, 1992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는 법률상담사와 통합되었다. 이에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을 위해서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법률 상담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정관을 수립하고 경제적 협상에 자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0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상담행위와 법률문서 작성 행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물론 변호사도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자이지만 변호사의 독점 영역이 아니다. 이 특권은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법률 종사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D. 2004년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호사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2004년 2월 11일에 법률 제2004-130호에 의해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이 법률 개정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변호사 직업활동을 하고자 원하는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의 자유로운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유럽공동체 지시사항에 따라 이것과 조화를 이루는 법률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표였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있기 전부터 프랑스는 이러한 조화를 실현했어야 했지만 여러 번에 걸친 유럽공동체의 명령을 받고 난 후에 법률 개정을 실현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이 대폭 수정되었고 그리고 직업연수 의무가 부과되었다(후술).

Ⅳ. 1971년 법조직역 통합에 관련된 직업 및 통합 과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에 의한 첫 번째 통합이 있기 이전에는 변호사와 지방법원 대소사와 상사법원 소송대리인은 비록 몇 번에 걸친 통합 논의는 있어 왔지만, 확실한 결론이 없었다. 그런데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은 위의 세 가지 직업을 통합하였으며, 그 결과 새롭게 생겨난 변호사는 선서를 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법률상담사는 이 통합에서 제외되고 다만 법률상담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신설하였다.

한편, 기업내 법률가를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자주 대두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71년 12월 31일 법률은 기업내 법률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A. 변호사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 제1조는 "새로운 변호사 직업은 기존의 변호사와 지방법원 변호사와 상사법원 변호사를 대체하고 개인적으로 혹은 민사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에서 언급된 세 직업은 변호사 선서를 하고 난 후 즉시 각자가 선택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 기존에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던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1990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이 새로운 직업의 변호사는 법률상담사의 역할까지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B. 지방법원 대소사(les avou□s)

15세기 말에는 변호사와 대소인(procureur)이 소송업무를 분담하였다. 변호사는 변론으로 의뢰인을 대리하고, 대소인은 소송 서류를 담당함으로써 의뢰인을 대리하였다.

그런데 이들 두 직업간에는 적지 않은 대립이 있어왔고 이원화된 소송구조는 법원 행정의 무질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나폴레옹 시대에 대소인(procureur)과 변호사를 구분하여 전자를 오늘날과 같이 대소사(les avoués)로 바꾸고 이들에게 사법공공직무자(les officiers

ministréríels)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소사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노동법분야 혹은 증권법 분야 등의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의뢰인들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의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1971년 12월 31일 법률은 지방법원 대소사를 새로운 변호사 직업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 대소사는 1971년 통합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정부가 1971년 법 제정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법원 행정의 혼란을 우려하여 우선 지방 법원 대소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과를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였다.[13] 이어 2008년 6월 9일 법무부 장관은 고등법원 대소사를 삭제하고 새로운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할 것을 발표하고 현재 그 삭제 기간과 방법에 대해 논의 과정 중에 있다.[14]

C. 상사법원의 소송대리인(les agrėės)

상사법원 소송대리인(les agrees)은 17세기 때부터 상사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상사법원이 인정해 준 사람이었다. 상사법원은 사법공공직무자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의뢰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아무나 변론이나 소송대리를 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선택된 소송대리인(les agréés)은 대소사와 변호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사법원은 인가를 받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상사법원 소송대리인은 실무적인 영역과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해결되는 영역에서 대소사와 유사한 위치로 자리를 잡았다.

13) Roger Perrot, Institutions juficiaires, Montchrestien, 12è édition, 2007, p. 364.
14) Rapport Darrois p.18.

1945년 11월 2일의 명령에 의해 개정된 1941년 12월 8일의 법률과 시행령이 이 관행에 대해 소송대리인(les agréés)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소송대리인(les agréés)은 “상사법원에서 정한 목록에 등록된 대리인”으로 정의되었고 그에게 인가를 허가한 상사법원 내에서만 변호사와 대소사처럼 소송대리나 변론을 할 수 있었다.

1971년 법률에 의한 상사법원 소송대리인의 통합은 대체로 간편한 것이었다. 먼저, 기존 상사법원 소송대리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140명 정도)[15], 이들은 사법공공직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편, 직역 통합으로 인해 상사법원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지만, 예전처럼 특정 상사법원에서만 주로 활동하였다.

D. 기업 법률가(Les juristes d’entreprise)

법률시장의 국제화와 유럽 시장 개방과 함께 프랑스 변호사 사회에 적잖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 법률가들에 대한 권리범위 결정의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다.[16]

프랑스의 기업 내 법률가 협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기업 법률가들은 8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 법률가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1971년 12월 31일 법률은 기업법률가들이 그가 속한 회사나 그룹 내에서 그의 임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사

15) Roger Perrot, Institutions juficiaires, Montchrestien, 12è édition, 2007, p. 338.
16) Serge Guinchard/Gabriel Montagnier/André Varinard,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Dalloz, 9ème éd. 2007, p.974.

서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 협회 등록을 탈퇴하고 기업 법률가가 될 수 있다. 상호적으로 기업 법률가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다만 하나의 회사 혹은 여러 회사에서 최소 8년 동안의 법률서비스 경력이 있어야 된다.

Ⅴ. 1990년 개정에 관련된 법조 직역 및 기타 법조 직역의 통합

A. 1990년 법 개정 이후 새로운 직업의 변호사

1. 변호사 활동 영역의 확장: 법률 자문과 법률문서 작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자문을 주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법률문제에 조언해 주는 것이다. 법률 상담은 반드시 소송과 관련될 필요 없이, 계약서 작성, 회사 정관작성, 협상 업무에서 법률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향후 변호사 상담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변호사의 독점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 이후로 법률 상담 및 법률 문서 작성 분야에서 특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변론과 대리

1971년 법률 제4조, 제5조 그리고 제6조는 변호사는 민법, 형법 및 행정법을 막론하고 고등법원 대소사와 국사원과 파기원 변호사들의

독점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정이나 사법기관 혹은 지도기관에서 의뢰인을 위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변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대리는 각 변호사가 등록된 지역 관할 법원에서만 해야 한다(동법 제5조 2항). 지방법원 관할 사안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한 소송대리와 변론은 지역적 한계 없이 프랑스 전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 대리의 지역별 관할의 원칙은 판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잘 파악하고 있음으로써 소송의 남용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를 소환하여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3. 자격 요건 및 겸업금지

1971년 법률 제71-1130호 제1조 1항(1990년 12월 31일의 법률 제90-1259호에 의해 개정)은 “변호사 직업은 자유직이고 독립된 직업이다”라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변호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는 몇 가지 제약을 수반한다. 그 첫 번째는 변호사 활동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의 자유와 독립성을 저해하는 직업의 겸업금지가 그것이다.

a) 자격요건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 11조는 변호사 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가 법원의 공공서비스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원 조력자라는 견지에서 자격에 관한 확실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4년 2월 11일 법률은 1971년 12월 31일 법률의 제11조[17]를 개정하여 변호사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요구하지 않고, 프랑스 법학대학의 4년 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대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혹은 대학장의 결정에 의해 인정된 학위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각 지방 변호사 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CAPA: Certificat d'aptitude á la profession d'avocat)에 합격하고, 단 외국인인 경우, 프랑스 법률에 대한 능력 시험을 거치고 난 후, 변호사 연수원에서 18개월 동안 연수를 받은 후에 변호사 협회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법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자는 변호사 자격시험은 면제된다(동법 12-1조). 더 나아가, 판사, 법대 교수, A등급의 법률공무원으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국사원과 파기원의 변호사, 고등법원의 대소사,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상사법원의 서기, 집달리, 공증인, 법정관리인, 변리사, 기업법률가 혹은 조합의 법률가는 물론 기업파산절차의 대리인도 변호사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2월 11일 법률에 따라 개정된 1971년 법률 제 83조에서는 유럽공동체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영구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동법 제89조는 유럽공동체 국가에서 최소 3년 동안 프랑스법률을 취급하는 활동을 실질적이고 영구적으로 영위한 것을 증명한 사람은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시험 없이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의 경우는 국가간의 상호인정 협약에 따른

17) 2008년 5월 30일의 법령(Ordonnance) 제2005-507호 19조에 의해 개정.

다(1971년 법률 제11조).[18]

다른 한편 2004년 2월 11일 법률은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14-2조를 신설하여 기존의 2년의 수습 변호사제도를 없애고 변호사 직업활동 전체 기간 동안 정기적인 연수 의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각각의 지방변호사 협회가 감시하는 제도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먼저 기존의 수습변호사제도가 비조직적으로 개인 변호사 아래서 혹은 하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됨으로써 실무경험의 수준이 현실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법률 시장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연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이다.

새로운 직업의 변호사들은 프랑스 변호사 협회들 중 하나에 등록해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에 그가 속한 변호사 협회를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4조). 그리고 그룹으로, 합동으로 혹은 회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그가 속한 그룹, 합동사무소 혹은 회사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쓸 수 있다(1971년 법률 제67조). 각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에 출신 대학, 특별한 전문분야, 과거의 법에서 규정한 법률종사직 혹은 프랑스와 외국에서 인정되는 기타 다른 자격증을 표시할 수 있다(동법 제1조 4항).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변호사와 법률상담사가 통합된 후, 법률상담사들은 회사법, 조세법 혹은 노동법 등 기존의 자신의 전문 분야를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반해서, 변호사들의 자신들이 독점해온 분야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8)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93-1420호에 의해 개정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전문분야 취득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법률은 전문분야에 대한 개념을 최소 2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하고 이론 시험에 통과하고 지방직업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 12-1조).

여기서 이론 시험은 대법원장(Garde des Sceaux)의 결정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 지방 변호사연수원이 주관하며, 필요한 실무 경력은 프랑스나 외국 혹은 회사의 법률서비스 혹은 합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전문 분야의 종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한 결정으로 변호사협회 중앙회가 제안하여 정한다(1993년 6월8일의 결정). 한편, 동법 제92조에 언급되어 있는 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대학에서 4년 이상 전문분야의 강의를 한 사람, 혹은 특수분야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발표한 사람과 같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증명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b) 겸업 금지

변호사 직업은 1971년 법률 제 1조 I, 3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된 자유직종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자유를 해치는 특정의 직업을 활동을 겸업할 수 없다(동법 제 7조 2항). 이에 1991년 11월 27일의 시행령 제D.111조 이하에서는 변호사들이 겸업할 수 없는 직종을 나열하고 있다.[19]

예를 들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위하는 모든 상업적 성격의 활동,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동업자, 유한책임회사의 지배인, 주식회사

19) Serge Guinchard/Gabriel Montagnier/André Varinard,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Dalloz, 9ème éd. 2007, p. 978.

의 이사회 의장, 지도부 멤버 혹은 대표이사 등.

한편, 1990년 12월 31일 법률은 1971년 법률 제6조에서 규정을 완화하여 7년 기간을 넘지 않는 한, 변호사들은 상사회사의 감사 혹은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D. 112조에서 D.114조까지). 더 나아가 변호사들은 파산절차에서 법정관리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상법 제L.811-10조). 그러나 변호사는 청산인은 될 수 없다(상법 제L.812-8조).

4. 변호사 직업활동 구조의 조정

1990년 변호사와 법률상담사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랑스 변호사들은 여전히 개인 변호사 사무실 형태로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법률적 필요와 변호사들의 활동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거대한 양의 자료 수집 및 사안의 신속한 처리에 있어서나 국제적 업무에 있어서, 외국 변호사들과의 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변호사들은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정적 능력과 위험에 대한 균등할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구조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인식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호사 합동 사무실은 오늘날 하나의 현대적 의미의 기업 성격을 띠고 변모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1990년 12월 31일의 법률 제90-1258호는 변호사 사무실 운영 형태를 상사회사와 유사한 새로운 법적 근간을 구축했다. 이제부터 변호사들은 자유직 활동을 위한 회사(SEL:les sociétés pour l'exercice d'une profession libérale) 형태의 여러 양상으로 모일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혹은 주식회사 형태 혹은 주식합자 회사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일정의 요건 하에서, 외국 법률사무소들에 의한 투자로 설립될 수도 있다. 이처럼 SEL 회사 형태는 법적으로 SEL회사에게 허용된 모든 형태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각 변호사들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변호사들만이 경영자가 될 수 있고, 직업 기밀에 속하는 표결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아닌 동업자들은 이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러한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형태에 따라, 변호사들의 활동 형태도 다양해졌다. 즉, 동업자로서, 동업 계약 요건에 따라 각자의 고객을 관리하거나, 고용 계약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로서 개인 고객은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변호사는 고용 계약에서 정한 내용 안에서만 고용주에게 종속될 뿐, 그의 변호사 자격이 내포하는 독립성은 유지한다. 그러므로, 그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B. 법률 상담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90-1259호에 의해 법률 상담사들은 새로운 직업의 변호사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통합 이후, 기존의 법률 상담사들은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법률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있다: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 제1조 1항은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모든 변호사들과 1990년 12월 31일의 법률 제90-1259호가 발효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15년 전부터 법률상담 직업을 영위해온 법률상담사들

은 새로운 변호사 직업에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데 이때 양도는 양수인이 된 법률상담사가 자신의 예전 직업과 새로운 직업 분야에서 최소한 20년 동안 활동하고 난 후에 실현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20]

C. 변리사(Les conseils en propri□t□ industrielle)

특허법에 관한 1990년 11월 26일의 법률 제90-1052호는 변리사 직업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특허 상담사»를 변리사로 통합하였다. 변리사들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의 취득, 유지, 발전 혹은 방어를 하기 위해 제3자를 위해 조언하거나 조력하거나 혹은 대리 역할을 한다. 변리사의 임무는 특허청(L'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허 영역과 그 근접 법률 영역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사서 증서를 작성한다. 이와 같이, 이러한 특정영역에서 변리사들은 변호사와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역할 분담을 하여 변리사들은 특허, 마크, 데생, 모델 및 저작권과 이에 유사한 권리의 취득에 주력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러한 권리의 방어 및 순전히 법률적 내용으로 여겨지는 영역을 담당한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모여 특허 및 법률종합서비스 그룹을 형성하는 사례가 자주 있지만, 프랑스 법률은 이러한 형

20)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1조 1항 « Les avocats inscrits à un barreau et les conseils juridiques, en exercice depuis plus de quinze ans à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u titre Ier de la loi n° 90-1259 du 31 décembre 1990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et qui renoncent à faire partie de la nouvelle profession sont autorisés à solliciter l'honorariat de leur activité professionnelle. Il en va de même pour ceux qui entrent dans la nouvelle profession, lors de la cessation de leur activité si elle intervient après vingt ans au moins d'exercice de leur profession antérieure et de la nouvelle profession ».

태의 그룹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두 유사 직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10년 전부터 있어왔고, 결국, 변호사 협회 중앙회는 2008년 9월 12일에 변리사 협회 중앙회는 2008년 10월 15일에 투표로써 두 직역의 통합을 결정하였다.

한편 두 협회의 통합 결정이 2009년 1월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통합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21]

이러한 통합은, 현재 변리사 직업 내에 법률적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변리사 직업의 통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변리사들 중에, 법과대학 4년의 학위를 가지고 법률적 파트를 담당하던 변리사는 변호사로 곧장 전환하고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던 변리사는 600시간의 법률 연수를 받아서 변호사로 통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2]

Ⅵ. 법조직역 통합 이후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변화[23]

최근까지 프랑스는 법률 상담과 사서증서 작성에 있어서,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업이나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검증되지 않은 여러 상담사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법률상담과 모든 여타 형태의 상담 사이를 분명히 구분할

21) Rapport Darrois p.30.

22) Rapport Darrois p.30.

23) Serge Guinchard/Gabriel Montagnier/André Varinard,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Dalloz, 9ème éd. 2007, p. 312 et s. ;Roger Perrot, Institutions judiciaires, p.386 이하.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법률 행위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었다.

1971년에 변호사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 당시에 이 문제가 논의 되었을 때, 법률가들은 법률상담과 증서 작성 행위를 법률 상담사와 변호사가 독점하게 하는 생각을 포기하였다. 왜냐하면, 문제는 기존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담 활동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이 분야의 직업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해 상담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24] 예를 들면, 건축가는 건축 도면을 설계하지만 도시계획법의 적용에 대해 자문을 해야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종사자들이 갖가지 양상에 대해 법률 상담과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90-1259호는 미국과 다른 대부분의 유럽 공동체 국가들을 따라 이러한 법률활동을 규제하였다.[25] 이 법률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과 증서 작성을 주 업무활동으로 할당하고 동시에 몇몇 요건과 방법 하에서 다른 몇몇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이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에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점은 먼저, 이러한 서비스 공여자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과 부수업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24) 본 보고서 제VII장 참고.
25) A. Bénabebt, JCP 1991, I. 3490.

결국,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90-1259호에 의한 개정 이후, “법률 분야의 자문과 사서증서 작성에 대한 규제”라는 제목하에 1971년 7월 31일의 법률 제 54조에서 66-6조는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법원과 대학 담당 장관부처가 함께 정한 기준에 적합한 학위 혹은 법률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 더 이상 아무나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게 되었다.[26)]

A. 법률 행위 규제 범위와 대상

1. 타인을 위한 법률 행위

법률에서는 타인을 위한 법률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타인을 위한 법률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

- 법률 영역에서 자문(1971년 법률 제54조), 즉 비록 구두로 했을지라도, 특정에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문서 수집과 정보 수집의 차원에서 정보 주거나 안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서증서 작성. 보통의 경우는 계약서와 같은 쌍방적인 문서를 의미하지만 세금신고서와 같은 일방적 문서들도 포함된다.

2. 통상적인 행위

동법 제54조는 “통상적으로” 행한 경우를 규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26) 이 조항은 1997년 4월 7일 법률 제97-308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통상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의사들의 불법행위 규제에서와 같이, 두 번째의 유료의 법률자문 혹은 문서 작성부터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3. 보수를 받는 행위

통상적으로 법률 자문이나 문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위의 세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법률자문과 문서작성 행위가 통상적이지만 보수를 받지 않거나, 보수를 받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1971년 법률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도 동법 제54조 4항과 제 62조 및 제66-4조의 규정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후술).

B. 법률자문과 법률 문서작성을 인가 받은 사람

1971년 법률은 타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받고서 법률 자문과 법률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에 “상당하는 자격과 학위”는 물론 도덕적인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상당하는 자격과 학위”의 불분명함을 수정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7일의 법률 제97-308호는 이러한 요건을 대폭 수정하였다. 이 개정 법률에 의하면, 법률자문이나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학 자격증(Licence en droit)을 소지하거나 법학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사법기관에서 인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동법 제54조).

더 나아가, 동법 제 56조에서 제66조는 법률 자문과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리스트로 정하고 있다.

이 리스트는 법률 자문과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다시 이러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당연히 취득하는 범주와 적합한 법률기관의 인정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1. 자격을 당연히 취득하는 경우

a) 법적인 자격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1971년 법률 제54조 3항)

이는 동법 제 56조, 57조와 58조에 언급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 제56조: 국사원 및 파기원 변호사, 변호사, 대소사, 공증인, 집달리, 동산경매인, 청산 관리인, 법정관리인. 이들은 “각자의 자격에 따라 정해진 영역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법률 조문과 사증을 작성할 수 있다;
- 제57조: 1936년 법령에서 언급된 사람들, 즉, 공무원과 교사들, 그러나 이들은 법률문서 작성을 하지 못하고 법률 자문만 할 수 있다.
- 제58조: 기업 내의 법률가들은 그들이 속한 회사의 업무 영역 내에서 법률자문과 법률 문서를 작성 할 수 있다.

b) 법으로 규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사(동법 제59조에 언급된 자)

법규로 규제되는 직업(les professions réglementées)에 종사하는 자격사는 당연히 법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해당 직종들은 타 법률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1997년 4월 7일의 법률에 의해 개정된 1971년 법률 제54조 4항). 예를 들면, 건축사, 공인중개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이러한 직종에 속한다. 그런데, 동법 제59조에서 세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으로 규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법률자문 혹은 법률문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주요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법률문서 작성의 경우에는 "공여된 법률서비스에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회계사, 공인중계사, 동산관리인과 공동주택 조합원과 건축사, 은행원, 보험회사 혹은 인정된 관리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1945년 9월 19일의 법령 제22조 7항은 공인회계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다[27]: "자문, 모든 종류의 조사연구, 모든 종류의 통계관련, 경제관련, 행정관련, 법률관련 혹은 세무관련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때 앞에서 언급한 업무들이 공인회계사의 주된 업무로 행해져서는 안되고 다만, 영구적이고 통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자문, 조사, 연구 혹은 조언 활동이 공인회계사가 책임지고 있는 회계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수업무이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들이 자신의 업무 영역을 넘어 변호사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생겨남으로써 변호사들은 1971년 법률 제66-2조의 견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28]: 프랑스 Bonneville의 제1심 법원은 1997년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1

27) Serge Guinchard/Gabriel Montagnier/André Varinard,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Dalloz, 9ème éd. 2007, p. 314.

28) 판례 :TGI Niort, 3 fév.1993. JCP 1993, II.22021 ; TGI Strasbourg, 22 avr.1993, Gaz.Pal 24 juill. 1993, note Damien.

심 법원의 판사들은 문제시 된 법률 업무와 회계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1심 법원 판사들이 회사설립 혹은 변경 문서 작성, 임대관리 계약서 작성, 상업자본 출자에 관한 문서 작성을 공인회계사의 업무로 취급하였고, 이 업무들은 그 자체로는 주된 법률행위로 보기는 힘든 것이므로 이는 변호사들의 독점영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9]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2000년 9월 7일의 파기원의 결정은 위의 1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법률행위는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이므로 공인 회계사의 업무에서 파생될 수 없고 회계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속업무로 여겨질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30] 더 나아가, 2004년 3월 25일의 법령 제2004-279는 1945년 9월 19일 법령 제2조에 5항을 신설하여 공인회계사들은 “회계 혹은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 한해서 회사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공인 회계사들의 활동영역이 법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했다.

2. 결정에 의한 승인으로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

a) 1971년 법률 제60조에서 언급된 자

1971년 법률 제60조에서는, 법규로 규제되지 않는 범주에 내에 있는 직업에 속해 있는 자에게 그들의 주요업무에 부속하는 업무 내에서 부수적인 형태로 법률자문을 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각자의 자격증 범위 내에 속한 부수적인 업무 내에서만 법률 자문과 문서작성을 할 수 있다(1997년 4월 7일 법률에

29) 판례 : TGI Bonneville, 23 avr. 1997(2000년 4월 3일 파기원에서 파기됨), TGI Nice, 30 avr. 1997, D. 1997. 390, note F.Terré.

30) 판례 : Crim. 11 avr. 2002, JCP 2003, Ⅱ, 10011, note Audran-Civ. 1re,4févr. 2003, D. 2003. 529.

의해 개정된 1971년 법률 제54조 5항). 부수적 형태의 활동은 국사원, 파기원, 감사원과 법과 대학 교수 각각 한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결정은 부수적인 형태로 법률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법인에게 요구되는 학위와 경력을 정하고 있다(1997년 9월 24일 법령 제97-875호).

예를 들면, 경영 자문, 자산 운영, 회계감사, 부동산 전문회사, 농어촌 전문가, 금융 상담사, 보험 상담사들은 2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범주에 속하는 자들은 그들의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혹은 인가된 기관에서 인정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동법 제 60조). 이 자격증의 승인 대상이 되는 자는 2000년 12월 19일 이후 여러 번에 걸친 결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자가 이에 해당한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처리>, <은행정보 영역>,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 <기술연구와 개발>, <기술적 분석, 실험 및 감사>분야의 상담-엔지니어 혹은 고문 <부동산 전문가>, <보험 감사 및 상담사>, <보험 상담사>.

인가된 전문 기관은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해당 대상자의 학위, 경력, 필요한 법적인 경쟁력을 점검한다.

b) 공공서비스 업무를 맡은 기관(동법 제 61조)

시민의 편익을 위한 조합과 단체 및 소비자 조합과 동법 63조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조합과 상호단체(제63조), 동법 제65조에서 언급된 업종 기관들은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요건에서, 결정에 의해 자격 승인을 얻으면 각 자격증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자문과 사증 작성을 할 수 있다.

c) 출판기관 혹은 정보통신을 통해 대중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관 (동법 제66조)

이 기관은 이 출판물의 작가가 법으로 규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 그들의 독자 혹은 청취자에게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

C. 도덕적 측면의 자격 요건

위에서 언급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법률자문 및 문서 작성의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4조에 나열된 선고를 받은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즉,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나 금지된 행동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동에 의한 형사 처벌; 동일한 성격의 음모로 인한 행정처분 혹은 관련 기관의 처벌(해임, 승인 혹은 인가의 말소, 철회, 회수); 개인 파산 선고 혹은 여타 기업의 회생절차 선고 혹은 파산절차 선고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 처벌.

D. 형사 처벌

법률가들은 법률상담과 사서증서 작성을 규제한 것은 몇몇 직종에게 이러한 법률 행위의 독점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용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영역에서 독점이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1990년의 법률이 1971년 7월 31일의 법률 제 54조에서 66-6조 사이에 삽입한 요건을 벗어난 법률자문 혹은 법적인 문서작성은 형사처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행위에 대한 규제는 특정의 범위에 한정된다.

즉,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고 행한 법률 행위에 대해 정해진 모든 요

건은 불법적인 법률 행위(동법 제 66-2조)로 취급되어 동법 제72조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무료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혹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 문제 제기: 부수적인 법률 행위 실행에 있어서의 개선점[3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 60조에서 언급된 것으로써, 부수적인 성격으로 행사되는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어떠한 법률도 “부수적 성격”에 대해 정의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부수적 성격의 업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법으로 규제되는 업종보다도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직역에서 더 난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더 많다.

동법 제60조에서 정한 각 직역의 주된 활동의 견지에서, 부수적 성격의 법률 상담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징은 해당하는 직업에 따라 상이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역이 변동된다. 그러나 이 직업의 행사 요건을 정하는 공공기관의 승인은 시대적 변이에 따라 재검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인기관에 의해서 기업에게 주어진 자격증은 기업 내의 법률업무 담당자의 법률적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법률 업무 담당자의 법률적 경쟁력에 대한 검열이 없었던 관행은 공인된 사립기관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간에 자격증 교부 시에는 물론 자격 허가 전 기간 동안 하나의 공모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부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락된 기관이나 개인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31) Rapport Darrois, p 64 et s 참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Darrois 보고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부수적인 성격의 법률 행위를 위한 직업에 승인을 하기 전에,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54조의 특별위원회는 더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승인에 있어서, 어떤 직업의 법률 상담자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후에, 직업 활동 요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요건을 정하여, 이미 교부된 승인에 대해 재검토 하도록 장관에게 제안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54조에서 언급된 특별위원회는 하위위원회를 개설하여 해마다 구체적인 자격 심사를 실시하여 보고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심사를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직업 종사자들 중에서, 부수적인 자격으로 법률상담 활동하기를 원하거나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 현장 감사 및 서류 감사를 받는다. 이러한 감사와 조사는 한편으로는, 인가된 전문직업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법 54조의 특별위원회와 그 하위위원회의 규정에서 따라 선임된 감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하위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법 54조의 특별위원회는 감사받은 개인 혹은 기업의 직원 중에서 남용적 요소를 발견할 경우, 이들에게 교부된 승인을 취소하도록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승인을 교부하지 않도록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Ⅶ. 향후 변화 방향

이 장에서 본 연구자는 2009년 3월에 만들어진 Darrois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Darrois 보고서는, 2010년 6월에 “특정 법조 직역 및 법률 직역의 통합”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중인 개정법률안을 만들기 전에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Jean-Michel DARROIS씨가 주축이 되어 작성된 보고서로서, 프랑스에서 좀 더 실력 있는 법조인 단체를 양성하고 각 분야 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먼저, 1971년 12월 31일 법률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비록, 이 보고서의 제안 내용이 모두 새로이 공포될 개정법내에 채택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현행 논의를 엿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해에 채택되지 않은 논의들은 다음 법률 개정안에서 다시 거론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A. 기업 변호사

변호사와 기업 법률가를 통합하려는 생각은 자주 거론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몇몇 법률들은 기업 법률가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8년의 경력을 가진 기업법률가들이 변호사로 전환할 수 있는 허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률로 규제되는 직업은 아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법률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두 직업의 통합이 내포하는 이점은 간과할 수 없다. 즉, 기업과 관련된 기업법률가들은 외국 기업들로부터 자신들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기업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다른 외국 법률회사들이 프랑스에 정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여, 기업 내에서 법률가들이 기업윤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업 내부의 전략 모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Darrois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업 변호사 제도 도입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32]

1. 기업 변호사의 새로운 자격 취득의 이점

기업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Certtificat d'aptitude á la profession d'avocat)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에 취업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취업변호사들을 위한 특별한 협회 등록 리스트에 등록된다. 기업 측에서는 고용계약을 통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고용계약 내에 임금 요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Darrois 보고서 연구자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활동중인 기업 법률가들 중에 8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들은 기업 변호사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고용 요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arrois 보고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기업 변호사 직업의 초석이 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a) 직업 기밀

변호사의 직업 기밀은 형법에 기초하고 있다.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32) Rapport Darrois p. 31 et s.

의 남용은 형법적으로 혹은 협회로부터 처벌된다.

변호사들 사이에 주고 받은 정보의 기밀유지는 변호사 직업윤리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 규칙은 변호사로 하여금 그의 동료들과 주고 받은 정보를 법정에서 혹은 그의 고객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연구자들은 기업 변호사들도 위와 같은 직업 기밀준수 이점을 누려야 하고 기업 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같은 기밀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b) 협회

기업 변호사들에게도 일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직업을 하나로 묶는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기업 변호사들을 위한 특수협회 등록을 제안한다. 물론 이 특수한 협회도 변호사협회 회장의 권위에 따르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 활동 규칙에 있어서는 일반 변호사 협회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다. 활동 규칙은 이익충돌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기업 변호사들은 자신의 개인 고객을 개발할 수 없다. 이는 기업에 파트 타임으로 종사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기업 변호사들은 그들의 기업을 위해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제안하고 있다.

c) 독립성 보장

독립성은 변호사 직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 변호사의 독립성은 노동 계약에 의해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맡겨진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지적 활동의 독립성은 여타 다른 변호사들과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B. 공증인에 상당하는 공증문서작성 효력

오래 전부터 변호사들은 공증인들과 같이 변호사들도 공증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1945년 11월 2일의 명령 제 1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증인은 공공직무자로서 당사자들 간에 작성된 증서나 계약서에 공공증서에 내포된 것과 동일한 공증성을 주고, 증서에 있는 날짜를 증명하고 공증문서의 보관과 등본 교부 및 송부를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 증서의 공증성은 공증인이 작성은 증서만이 아니라, 호적 증서, 행정문서, 법원 판결문 및 다른 공공직무자가 작성한 증서를 포함한다. 이러한 공증문서는 프랑스 공화국 전체에서 인정되고 실행력을 갖는다. 이러한 실행력은 공증된 증서 위에 찍힌 국새로 증명되고, 공증인들의 활동은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공증인과 공증증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Darrois 보고서 연구자들은, 공증인(notaire)의 공증업무는 공증문서의 특수성과 유용성을 이유로 변호사 직역에 통합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그 대신, 당사자들 간에 작성된 사서증서 위에 변호사가 연서(contresigné)할 경우에 가치를 가중시키고 민법 제1322조의 견지에서 인정되게 하여 당사자간에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을 추천한다: 변호사가 사서증서에 연서를 하면, 변호사가 이 증서를 검토했고 그의 고객에게 자문을 했다고 간주됨으로써, 이것에서 기인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변호사는 그의 고객의 신원과 법적 행위 능력을 확인하고 난 후, 그의 고객이 당해 증서의 내용을 잘 알고 서명했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고객은 그의 서명에 대해 향후 다르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에 의해 연서된 사서 증서는 민법 제1322조의 견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서증서가 된다. 이 증서는 증서에 서명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자와 모든 관련 있는 자에게 공증문서와 동일한 신용을 얻게 된다.

연구자들은 1971년 12월 31일의 법률내용중의 타이틀II “법률자문과 사서증서 작성” 파트에 챕터3 “변호사의 연서행위”를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즉, 삽입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서증서 위에 당사자들의 양쪽 변호사가 한 연서는 각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이 증서가 갖는 법적 효력을 분명히 확인했음을 증명한다. 그의 연서 행위로 인해, 변호사는 그가 자문을 해준 고객이 그에게 전해준 정보에 근거하여, 그 고객에게 당해 증서의 전적인 유효성과 효과에 대해 보장한다.

위의 요건하에서 연서된 사서증서는 민법 제1322조의 견지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 만약, 변호사가 단독으로 자문 혹은 문서작성을 한 경우, 변호사의 연서 행위는 이 증서의 모든 당사자들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책임진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요건 하에서 변호사가 도장을 첨부하면, 변호사의 연서 행위는 특별 법규정을 제외하고 법으로 요구되는 자필서명을 대신한다.”

한편, 변호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연서행위는 변호사들의 법률자문과 문서작성 활동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연서 행위에서 기인하는 책임으로 인해 변호사들은 그들의 자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 제안은 사서증서의 법적인 안전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C. 새로운 활동 허가

법률 시장 내에 은행, 보험, 법률상담회사, 채권회수 회사 및 회계사 혹은 경영자문회사 등이 발전하면서 변호사와 경쟁적인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다른 서비스 공여자들과의 경쟁에서 변호사들은 많은 고객을 상실하여 수익성 하락은 물론 사법적 조력을 원하는 고객을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변호사 사회의 보수성과 대담한 시도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에게 열려 있고 혹은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했던 다른 직업 영역이 존재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시도해 보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90년 이후, 변호사 직업은 상업적 성격의 활동을 겸업할 수 없다. 1991년 11월 27일의 시행령 제 111조와 115조는 “변호사 직업은 변호사 직업은 다른 직업과 겸업할 수 없다. 특히 유한책임회사의 동업자 혹은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영-미법 국가들에서처럼, 법률가들이 모든 회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과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

로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 사이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법적으로 변호사에게 금지하고 있는 활동 목록을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변호사 직업의 독립성을 해치거나, 자유로움을 방해하거나 그의 임무에 필요한 유연성을 해친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최근의 신탁분야에서 변호사 직업에 대해 실행된 개정 내용은 더욱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2008년 8월 4일의 법 제 2008-776호는 변호사에게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의 부여는 상업적 성격을 띤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이 겸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여러 활동에 대해, 특히, 스포츠 대리인 혹은 예술 중개인 역할에 대해 향후에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스포츠 대리인 역할에 대해서는 노동법 제 L7121-11조가 국회법률안으로 제안되어 검토된 바 있다.

상업적 성격을 내포하는 활동의 겸업금지 조항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기업의 전력적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 변호사 자격을 창설하려는 시점에서 더더욱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에, Darrois보고서 연구자들은 변호사들이 상업과 기업 분야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겸업 금지 목록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직업의 겸업은 물론 상업활동도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사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직무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 깊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사와 변호사 간의 반복되는 분쟁은 회계사들이 사법적인 전문성의 측면에서나 법률 자문 능력에 있어서나 변호사에 비해 훨씬 떨어지지만,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고객들에게도 법률/회계 종합

서비스 공여를 제안하는 일이 많다.

한편, 이러한 경쟁적 환경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촉구하고 고객의 측에서는 사례비를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들 간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시행령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 변호사들이 회계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들은 회계법인의 고용인으로서 변호사 사무영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1945년 9월 19일의 명령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사 자격에 관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D. 기타 Darrois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약

기타의 Darrois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고등법원 대소사와 변호사를 통합할 것
2. 2014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의 소송대리에 관한 지방별 독점권 삭제하는 방향 제의
3. 기업 변호사 자격을 신설하여 현재 기업내법률가들이 변호사회 특별 명부에 기제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변론과 개인 고객 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정관리인(administrateur judiciaire) 직업은 유지하고 다른 인접직역의 전문인들과 협력할 것 권유.
5. 공증인(notaire)의 공증업무는 공증문서의 유용성을 이유로 변호사와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당사자들 간에 작성된 사서

증서 위에 변호사가 연서(contresigné)할 경우에 가치를 가중시키고 민법 제1322조의 견지에서 인정되게 하여 당사자간에 공증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

6. 자유직회사(sociétés d'exercice libéral (SEL))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7. 외국에 프랑스 법률사무소 설립 장려.
8. 변호사들이 기업이나 상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겸업 금지 조항을 검토하고 해당 자격을 습득한 변호사들이 회계사 활동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들의 사무실에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회계사와 변호사 겸업을 제안하는 근거는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기업 내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해야 하는 부분을 회계사가 담당함으로써 변호사들과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9. 법조인접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대법원(Garde des sceaux)이 이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증인(notaire)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공증인 사무실을 열수 있도록 고무하기.
10. 국사원과 파기원 변호사들의 대표권 독점 유지.
11. 국사원과 파기원 변호사 수를 180명까지로 증가시키기.
12. 일반변호사들이 국사원 변호사와 파기원 변호사들과 협력계약 등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
13. 국사원과 파기원의 운영 현대화.
14. 상사법원의 서기 자격 유지.
15. 집행관, 동산경매인과 청산인이 공동 인접직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16. 법정관리인 직업을 유지하되 이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단체로 모

이게 하고 변호사와 회계사들과 인접직역에서 협력할 것.

17. 법정관리인과 청산인들을 감사하는 감사단 내에 변호사 1인, 판사1인 혹은 회계사 1인을 참여시킬 것.
18. 부수적인 성격의 법률 서비스 제공 관행이 다른 법조직역과 정당한 경쟁 규범을 따르도록 하고 각각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체 서비스 비용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말 것.
19. 부수적인 성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 취득 의무를 지금까지 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른 인접 영역에까지 확대하기(예를 들면, 자산관리사).
20. 법학대학 교육 내용 중에 법률 이외의 과목에 많은 부분 할애 할 것.
21. 법과 대학을 졸업한 후, 법률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실용 과목을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설립하기.
22. 법조직역의 직업연수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23. 여러 법조직업에게 공통된 고객에 대해, 고객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련 직업기관에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여러 법조직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24. 회사법 및 재무 영역에서 법조직역과 회계사직역 간의 공동기관 설립 허가.
25. 법조직역에서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규정 완화하기.
26. 공동 법조직역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립하고 관리하는 법인 형태의 상급 위원회 설치하기

Ⅷ.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 법조직역의 통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변호사 직업을 규제하는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71-1130호는 거듭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법조직역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새롭게 탄생된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확연히 보여 주었다. 더 나아가 Darrois 보고서에서 제안하여 검토 중인 새로운 법률안도 같은 명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존 하는 다른 법조직역 간에는 물론 향후에 발전하게 될 새로운 법조직역에 대해서도 협력 내지는 통합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조 직역의 통합과 유사 직역들 간의 협력은 오늘날 법률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국제간의 법률 교류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조직역 통합이 내포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무엇보다도, 각 인접직역 간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있다. 프랑스에서도 1971년 이후 법조직역 통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각 직역 간에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던 점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법조인접직역 통합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각 직역 간의 특권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국제화라는 큰 명제 앞에서 법조인접직역 간의 통합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Institutions judiciaires(법조체제), Roger Perrot, Montchristien, 12ème édition 2007.

-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사법 체제), Serge Guinchard, Gabriel Montagnier, André Varinard, Dalloz, 9ème édition, 2007.

- Règles de la profession d'avocat(변호사 직업에 대한 규칙), André Dalloz, 2008/2009.

- Comment devenir avocat(어떻게 변호사가 되는가), Serge Guinchard, Montchristien, 12ème édition 2008.

- 각국의 변호사제도, 법무부, 2001.

2. 보고서

- Le rapport de Monsieur Henri Nallet « Les réseaux pluridisciplinaires et les professions du droit : 다정공 조직망과 법조직역 » La documentation française-1999.

- Le rapport de Maître Jean-Marc Varaut «Mission de réflexion et de proposition en vue de l'élaboration d'un code d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ction : 법조직역과 법률직역 법전을 정비하기 위한 제안과 숙고» La documentation française-1998.

- Rapport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법률 직업에 관한 보고서) Jean-Michel DARROIS 2009년 3월

3. 논 고

- Comment decient-on conseil fiscal ?- La partique professionnelle d'un avocat fiscaliste- L'avocat en droit fiscal, Jean-Jacques Michallon avocat fiscaliste www.j2m-online.fr

4. 판례

- 판례 : TGI Niort, 3 fév.1993. JCP 1993, II.22021 ; TGI Strasbourg, 22 avr.1993, Gaz.Pal 24 juill. 1993, note Damien.

- 판례 : TGI Bonneville, 23 avr. 1997(2000년 4월 3일 파기원에서 파기됨), TGI Nice, 30 avr. 1997, D. 1997. 390, note F.Terré.

- 판례 : Crim. 11 avr. 2002, JCP 2003, II, 10011, note Audran-Civ. 1re,4févr. 2003, D. 2003. 529.

<저자 이력>

한동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외국법령
2010-1

프랑스 법조인접직역 통합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0년 10월 4일 발행
저 자 한 동 준
발행인 조 용 근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주 소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전 화 (02)521-9544 팩 스 (02)521-9459

<비매품>